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85 발의연월일: 2021. 5. 21.

발 의 자 : 임이자·박대수·추경호

권성동 • 박덕흠 • 이종성

정점식 · 조수진 · 권명호

태영호 · 하영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고지·독촉의 서류를 송달할 경우 우편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,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 납입고지만 전자송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, 독촉고지서에 대한 송달 방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더라도 보험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독촉고지서는 별도 우편으로 발송되어 업무에 일관성도 없고 신청자도 헷갈려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.

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납입고지와 독촉장을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전자송달방식으로 발송하여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 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 문서 독촉에 대한 신청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독촉의 도달시기에 관하여는 제16조의8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고지"는 "독촉"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) ①·② (생 략)	제27조(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등에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.이 경우 전자문서 독촉에 대한신청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.
<u><신 설></u>	④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독촉의 도달시기에 관하여는 제16조의 8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고지"는 "독촉"으로 본다.
<u>③·④</u> (생 략)	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